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09호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대책을 포함한 안전도시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인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안전도시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 나.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의 기능을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부터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ykh50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5년 마다”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의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대행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u>5년</u>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안전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 <u>매년</u> ----- ----- -----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7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1. (생략)</p> <p>2.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p> <p>3. ~ 5. (생략)</p> <p><신설></p>	<p>제7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① ----- ----- -----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 -----</p> <p>1. (현행과 같음)</p> <p><삭제></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대행한다.</p>
<p>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p>	<p><삭제></p>

현행	개정안
<p><u>호의 사람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대전광역시교육감</u> <u>2. 대전지방경찰청장</u> <u>3. 시 자치구청장</u> <u>4. 시 시민안전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소방본부장</u> <p><u>④ 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대전광역시의회의원</u> <u>2. 안전도시 추진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u> <u>3. 그 밖에 안전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p><u>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u>제9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된다.</u></p> <p><u>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u></p>	<p>〈삭제〉</p>

현행	개정안
<p><u>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10조(실무협의회) 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u></p> <p><u>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시민안전 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u></p> <p><u>1. 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의 분야별 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u></p> <p><u>2. 시 자치구의 안전관련업무 담당국장</u></p> <p><u>3. 안전도시 추진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u></p> <p><u>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u></p> <p><u>⑤ 실무협의회 간사는 안전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u></p>	<p><삭제></p>
<p><u>제11조(관련기관의 협조요청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p>	<p><삭제></p>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업무를 관장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①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